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 심의 검토보고

[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]

2023. 11. 28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: 한상규

1. 연구단체 운영 현황

연구단체명	구성인원	대표의원
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	7명	정윤주

2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심의.

3. 심의 대상 연구단체

○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

○ 소요예산: 4,000천원 (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,325십만원의 10% 이내16,000천원)

5. 검토보고

○ 연구활동 결과보고

연구단체명		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
연구내용	연구주제	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
	연구목적	전문가 자문과 집중적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자원순환체계 점검과 주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	연구결과	(별 첨)

연구 활동비	수령액	금사백만원(₩4,000,000)	
	집행액	금사백만원(₩4,000,000)	
	잔액	없음	
	집행내역	홍보비(현수막)	금오만오천원 (₩55,000)
		강의비(교육강의료)	금일백만팔천원 (₩1,008,000)
		회의비 (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)	금오십육만이천구백원 (₩562,900)
		토론회 개최비	금일백사십팔만일천사십원 (₩1,481,040)
		결과보고서 제작비	금팔십구만삼천육십원 (₩893,060)
연구 용역비	수령액 / 집행액	금이천만원(₩20,000,000)	

■ 검토의견

- 2023년 11월 ‘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’ 연구단체가 연구 활동 결과를 지난 10월 주민을 초청하여 주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
- 2013년 11월 7일 제정된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(이하 조례)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,
- 심의내용은 연구 활동비 책정과 배분,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‘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(1억 7,325만원)의 10% 이내에서 지원하고,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’로 규정하고 있고,
- 조례 제10조 제2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
 1.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, 2.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, 강사료,

전문가 지문경비, 세미나 공청화·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어, 검토결과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 적절하다고 판단되며

-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량 처리, 생활폐기물 배출 등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이슈 되고 , 폐기물 발생 사전 억제 등 폐기물 저감을 넘어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 감량, 자원재활용 등 자원순환에 집중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이에,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자원순환시설 현장을 방문하고, 토론, 연구와 더불어 자원순환체계 연구용역을 의뢰하고, 활동 결과를 다수의 주민을 초청하여 성황리에 **주민 보고회**를 개최하는 등 모임 연구 결과는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.

※관계법령

- 1) 제9조(의원연구단체 지원)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% 이내에서 지원하고,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 2019.3.7.)
- ② 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10.12, 2019.3.7.)
-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,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. (개정 2019.3.7.)
-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,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- 2) 제13조(연구활동 보고서 제출)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연구결과는 「의원연구사례집」으로 발간할 수 있다.
-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